

의안번호	제 782 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이상욱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6월 30일

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상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8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6월 30일
발 의 자 : 이상욱, 박형용, 이숙애
이의영, 장선배, 허창원
송미애

1. 제안이유

- 가.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으며, 제도적 보완을 위해 「아동복지법」 등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,
- 나. 도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개정함.
 - (현행)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
 - (개정)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
- 나. ‘피해아동’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함.(안 제2조)
- 다.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)
- 라. 연차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계획 수립을 규정함.(안 제4조의2)
- 마.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의3)
- 바.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의4)
- 사.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업무를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개정함.(안 제6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-78호
- 다. 협 의 :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
- 라.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” 를 “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(이하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으로, “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(이하 “가정위탁지원센터”라 한다)”를 “가정위탁지원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피해아동”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아동보호”를 “피해아동 보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발견·보호·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아동학대 발견 신고)”를 “(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경찰관서”를 “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도지사는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에게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
2.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3.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시스템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법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4조의3(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·홍보)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시장·군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,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조의4(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, 피해아동 치료·보호, 부모상담 및 2차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, 어린이집, 충청북도경찰청,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4조의5(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) 도지사는 국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아동학대예방”을 “아동학대 예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사례관리”를 “사후관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”을 “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“도지사가 정하는 가정위탁”을 “가정위탁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아동의”를 “피해아동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보호”를 “피해아동 보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충청북도 아동의 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아동복지전담기관”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<u>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</u>(이하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이라 한다) 및 법 제48조에 따른 <u>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</u>(이하 “가정위탁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말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</p>	<p><u>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<u>아동보호전문기관</u> ----- ----- ----- <u>가정위탁지원센터</u>----- -----.</p> <p>5. “<u>피해아동</u>”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</p>

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학대아동의 발견·보호·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아동학대 발견 신고)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피해아동 보호-----

-----.

②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발견·보호·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4조(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)

① -----
-----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-----.

② 도지사는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4조의2(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

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

<신 설>

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

2.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3.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시스템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법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 아동정책시행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4조의3(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

· 홍보)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시장·군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,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6조(아동복지전담기관의 업무) ①
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
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
및 응급보호
2. (생 략)
3.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
4. 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
5.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
·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
6.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
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

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
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4조의4(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
축)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, 피
해아동 치료·보호, 부모상담 및
2차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청
북도 교육청, 어린이집, 충청북도
경찰청,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
설, 의료기관, 법률기관 등 관계
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
야 한다.

제4조의5(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
지정) 도지사는 국·공립병원, 보
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
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
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6조(아동복지전담기관의 업무) ①

-----.

<삭 제>

2. (현행과 같음)
3. 아동학대 예방 -----
4. ----- 사후관리

<삭 제>

6. -----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
아동 보호에 관한 ---

② -----
-----.

1. ~ 7. (생략)

8.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

제11조(비용지원)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복지 관련 기관, 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비밀 준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----- 가정위탁-----

제11조(비용지원) -----
----- 피해아동 -----

-----.

제12조(비밀 준수 의무) -----
----- 피해아동 보호-----

-----.

관계 법령

□ 아동복지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. “피해아동”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.

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
2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·교육·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
3.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·운영
4.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

제23조(아동학대예방의 날)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,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,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6조의2(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

제29조의7(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전담의료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전담의료기관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, 피해아동·가족·친족, 보장원의 장,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, 경찰관서의 장,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. 15., 2020. 4. 7.>

1.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
2. 신체적·정신적 치료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
3.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) ① 삭제 <2019. 1. 15.>

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4. 1. 28., 2016. 3. 22., 2017. 10. 24., 2019. 1. 15.>

1. 삭제 <2020. 4. 7.>
2. 삭제 <2020. 4. 7.>
3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
4.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
5.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
6. 삭제 <2020. 4. 7.>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

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4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, 2019. 1. 15., 2020. 3. 24.>

1.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(이하 “아동권리보장원”이라 한다)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2.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)
3. 「아동복지법」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
4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5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6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7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8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
9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0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
1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
1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
13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
14.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15.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
16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·치료·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17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,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18.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
19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20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
2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22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·강사·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·직원
23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
24. 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
25. 「입양특례법」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
비 용 추 계

1. 사업개요

-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등에 대한 보호·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 소요경비 등

3. 관련조문

- 안 제4조의 3(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·홍보)
- 안 제5조(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, 필요사업 추계 및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산출

-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·홍보(도비)
-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(국비 매칭)
-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(도비)

나. 추계 결과 : 향후 5년간 17,858,851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국·도비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	
세 입	0	0	0	0	0	0	
국비	0	0	0	0	0	0	
도비	0	0	0	0	0	0	
세 출	2,929,760	3,220,236	3,539,760	3,891,235	4,277,860	17,858,851	
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·홍보 (도비 100%)	25,0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25,000	
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(국비50%, 도비50%)	2,328,570	2,561,427	2,817,570	3,099,326	3,409,260	14,216,153	
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(도비100%)	576,190	633,809	697,190	766,909	843,600	3,517,698	
재원 조달	2,929,760	3,220,236	3,539,760	3,891,235	4,277,860	17,858,851	
의존 재원	소 계	1,164,285	1,280,713	1,408,785	1,549,662	1,704,631	7,108,076
	보조금	1,164,285	1,280,713	1,408,785	1,549,662	1,704,631	7,108,076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1,765,475	1,939,523	2,130,975	2,341,573	2,573,229	10,750,775
	지방세	1,765,475	1,939,523	2,130,975	2,341,573	2,573,229	10,750,775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시·군비	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